접 수	의안과 - (20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제협력위원회에의 학생 참가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 및 문화재 반환에 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02월 03일

청 원 인

성 명 : 이 하 은 (인) 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법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한신아파트 2동 308호

전화번호 : 02)897-9011 (휴대전화:010-6306-9055)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한신아파트 2동 308호 성명 : 이 하 은
건 명	국제협력위원회에의 학생 참가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 및 문화재 반환에 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02월 03일

소개의견

청원인 이하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2012년 2월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안건은 『1965년 한일 양국 간에 채결된 문화재 협정의 개정안』입니다.

문화재 협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문화재 반환 혹은 원상회복의 용어를 회피했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극적인 문헌의 규정으로 반환 문화재 목록에는 민간인 소장품은 단 한 점도 들어 있지 않고, 정부 소유물도 중요한 것은 모두 제외되었다. 이는 일본 식민통치의 불법성과 비정상적인 문화재 반출의 적법성 문제를 한국정부가 따지지 않은 채 한일문화재 협정이 체결된 결과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 시에 반출된 문화재의 원상회복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그 근거와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환 문화재 목록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반출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현 사유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공여한다.

③우리나라 문화재가 후에 일본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한국정부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한다.

현행	개정문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2조 ①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반출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현 사유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공여한다. ③우리나라 문화재가 후에 일본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한국정부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한다.

신구문 대조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한·일 협정 제 2조를 보면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하지만 한·일 협정이 1965년도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다 돌려주지 않았다. 약 4000여 가지의 부속서에 기재된 문화재 중 1432가지만이 반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재협상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 반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2. 주요골자

□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반출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현 사유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공여한다.

③우리나라 문화재가 후에 일본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한국정부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한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2조 ①일본 정부는 일제강점시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반출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현 사유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공여한다. ③우리나라 문화재가 후에 일본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한국정부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한다.

청원인 성명 : 이 하 은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한신아파트 2동 308호
청원인 전화번호 : 010-6306-9055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